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 
심사보고서

'96. 5. 11.  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5.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96.5.3.
- 다. 상정일자 : 제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96.5.11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연호 보건지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6개 전염병을 대상으로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, 매년 유행하고 있는 “유행성 독감”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,
-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 투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, 일부약품(아이나)의 단독처방시에만 수수료가 없이 무료 보급하여 결핵의 조기퇴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현재 실시하고 있는 “유료예방접종” 항목에 “유행성 독감”에 대한 예방접종사항을 추가하고,
- “항결핵제 보급” 항목의 비고란에 “단, 아이나(INH) 단독처방만 무료임”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<별표> 수수료액표중, 2. 항결핵제 보급의 비고란에 “단, 아이나(INH) 단독처방만 무료임”을 신설하고, <별표> 수수료액표중 3. 유료접종 종목란에 “사. 유행성 독감”을 단위원에 “0.5ml”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(1991.3.8. 법률 제4355호) 제8조 및 결핵예방법(1993.12.27. 법률 제4635호) 제29조제3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,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

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박영길 위원) : 아이나(INH) 단독처방만 무료인데 복합처방은 유료로 했는가?
- 답변요지(김연호 보건지도과장) : 결핵예방사업지침에 의해서 아이나(INH) 단독처방만 무료로 하고, 아이나(INH)가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받았으나 앞으로는 받게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7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5.2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현재 6개 전염병을 대상으로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, 매년 유행하고 있는 “유행성 독감”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,
-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 투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, 일부약품(아이나)의 단독처방시에만 수수료가 없이 무료 보급하여 결핵의 조기퇴치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현재 실시하고 있는 “유료예방접종”항목에 “유행성 독감”에 대한 예방접종사항을 추가하고,
- “항결핵제 보급” 항목의 비고란에 “단, 아이나(INH) 단독처방만 무료임”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5.12.29. 법률 제5069호) 제15조, 제128조, 제130조
- 보건소법(1991.3.8. 법률 제4355호) 제8조
- 결핵예방법(1993.12.27. 법률 제4635호) 제29호제3항

- 4. 조례(안) : 별첨
- 5. 예산조치필요성 : 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 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<별표>수수료액표중, 2. 항결핵제보급의 비고

란에 “단, 아이나(INH)단독처방만 무료임”  
을 신설한다.  
<별표>수수료액표중, 3. 유료접종 종목란에  
“사. 유행성 독감”을 단위란에 “0.5ml”를  
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<별표> 수수료액표					<별표> 수수료액표				
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	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
1.(생략)					1.(현행과 같음)				
2.항결핵 제보급	가.~나. (생략)	(생략)	(생략)	<신설>	2.항결핵 제보급	가.~나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단,아이 나(INH) 단독처 방만무 료임
3.유료접 종	가.~바. (생략)	(생략)	(생략)		3.유료접 종	가.~바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	<신설>	<신설>				사. : 유행성 독감	0.5ml		
4.~5. (생략)					4.~5 (현행과 같음)				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 
관한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5. 11.  
도시건설위원회

- 1. 심사경과
 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4월 26일  
마포구청장 제출
  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4월 30일
  - 다. 상정일자 : 제38회의회(임시회) 제1차  
위원회(96.5.11.) 상정, 질의  
토론, 의결
- 2. 제안설명의 요지
  - 제안설명자 : 토목과장 정만근
  - 가. 제출이유

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 시설의 안  
전진단, 공사설계시행등에 관하여 필요시  
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 
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 
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 
에 의거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 
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
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  
임.

나. 주요골자  
도시시설의 안전진단, 복구대책에 관한  
사항등의 자문등 건설기술자문단의 기능  
자문단 구성, 임기 및 단장 부단장의  
직무에 관한 사항